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28

발의연월일: 2021. 7. 5.

발 의 자:이재정·강득구·김남국

김민철 • 김병욱 • 민병덕

오영환 · 이소영 · 이형석

장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나 지원 없이 미성년자인 18세에 자립을 위하여 퇴소하게 되는 청소년의 경우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 감을 갖지 못하고, 안정적이고 질좋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 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제39조의2 및 제4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취업"을 "취업·심리상담"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	제38조(자립지원) ①
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	
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	
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	1
육· <u>취업</u> 등의 지원	<u>취업·심리상담</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
	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
	<u>원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u>
	<u>구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u>
	<u>치·운영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
	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
	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41조의2(재정지원)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 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 설 퇴소 이후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